

『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의 변경으로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「지방재정법」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「아동복지법」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
- 「지방재정법」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
 - 안 제8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아동복지법」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,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
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
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
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된 관계법령 등을
수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
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2011. 4월 제정한 이후 변경된 조문의 용어 및 관계법령을
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보조금 지원
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
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